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박정현 · 임미애
김용태 · 이춘석 · 이학영
염태영 · 장종태 · 이광희
김남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,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,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, 교육경비 지원, 돌봄·교육복지, 통학안전,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·설명·

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·군·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·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시·군·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·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 신설).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3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보고와 질의응답) ①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·

군·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35조에 따른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·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·군·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·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·군·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5조의2(보고와 질의응답) ①</u> <u>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</u> <u>당 시·군·구의회나 그 위원</u> <u>회에 출석하여 제35조에 따른</u> <u>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</u> <u>및 교육·학예와 관련하여 중</u> <u>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</u> <u>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</u> <u>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②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</u> <u>해당 시·군·구의회나 그 위</u> <u>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무에</u> <u>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</u> <u>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</u> <u>출석·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</u> <u>구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</u> <u>·군·구의회나 그 위원회에</u> <u>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</u> <u>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</u>